

의 안 번 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18. 11. .

의 결
사 항

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발의연월일	2018. 10. 30.
발 의 자	이선우 의원 외 4명

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30.

발의자 : 이선우 · 이지연 · 신문식
송용자 · 홍난이 의원(5명)

1. 제안이유

구미시의회 권재욱 의원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내 용

가. 구성인원 : 9명 (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 7명)

나. 존속기간 : 특별위원회에서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다. 활동내용 : 구미시의회 권재욱 의원 징계심사

3. 관련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

나. 지방자치법 제57조(윤리특별위원회)

다.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)

라.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(구성)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57조(윤리특별위원회)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□ 「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